

제 1441 호
1989. 6. 27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고 권 건
 편집인: 공 보 관 반 충 남
 전 화: 731-6111~3
 인 쇄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 전 화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- 제 2452 호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예비조례중개정조례 3
- 제 2453 호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3
- 제 2454 호: 서울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4
- 제 2455 호: 서울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4
- 제 2456 호: 서울학생수련장설치조례 5

◎ 교 육 규 칙

- 제 335 호: 서울교육원칙규칙중개정규칙 5
- 제 336 호: 서울시립도서관도서열람규칙중개정규칙 5
- 제 337 호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6

(이면계속)

영										
발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338 호 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구정 회의하 사무분장규칙증개정 규칙	7
◎ 공 고	
제 529 호 : K·S 표시정지처분공고	8
제 532 호 : 도시계획사업(교통광장) 실시계획공람공고	8
제 539 호 : 도시계획사업(지하철도및부대시설) 실시계획변경	9
제 543 호 : K·S 표시정지처분공고	10
제 545 호 : 재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	11
제 546 호 : 도시계획사업(공원조성) 완료공고	11
◎ 구 고 시	
제 19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12
◎ 구 공 고	
제 73 호 : 관인사용변경공고	12
◎ 사업소고시	
제 14 호 : 선박운항허가	14
◎ 사 령	
◎ 정 정 공 고	
제 255 호 : 발령사항정정 붙임 : 7급공무원면직 고침 : 7급공무원경고	

조 례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여비초빙증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9. 6. 26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김 상 준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452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여비초빙증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국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"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"을 "운임"으로 하고 "가족이전비의 10 중으로 한다"를 "가족이전비로 한다"로 한다.

제 3 조의 제목 "여비의 정액"을 "국내여비정액"으로 하고 "여비는"을 "국내여비는"으로 한다.

제 4 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부무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9. 6. 26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김 상 준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453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부무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지방공무원 부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0 조에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법 제 46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제 21 조 및 제 22 조를 각각 제 24 조 및 제 25 조로 하고, 제 23 조를 제 22 조로 한다.

제 21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21 조 (휴가기간중의 공휴일)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의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23 조 (공무외의 국외여행)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교육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.

1989. 6. 30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김상준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454 호

서울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교육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설치) 서울특별시 교직원들의 정신수련과 교육·집회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하에 서울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2조(위치)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중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에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학생수련장설치조례물 이에 공포한다.

1989. 6. 30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김상준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455 호

서울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학생교육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치) 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 106번지에 두고, 야외교육장을 다음과 같이 둔다.

1. 대성외집: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48번지
2. 천마외집: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시 조경동 산 1번지의 1호

제7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기타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

제9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야외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학생수련장설치조례물 이에 공포한다.

1989. 6.30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김상준 인

○ 서울특별시시조례 제 2456 호

서울 학생수련장 설치조례

제 1 조 (설치목적) 서울특별시 학생의
신신수련과 야외교육을 위하여 서울
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하에 서울학생
수련장(이하 "수련장"이라 한다)

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 및 위치) 수련장의 명
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1. 모현야영수련장: 경기도용인군 모
현면일산리 산 25번지의 1호
2. 퇴촌야영수련장: 경기도평주군 퇴
촌면우산리 산 279번지의 2호
3. 대천임해수련장: 충청남도보령군
대천읍신촌리 1454번지
4. 양양임해수련장: 강원도양양군 손
양면송정리 산 1번지의 6호

제 3 조 (정원) 수련장에 두는 공무원
의 정원에 관하여는 따로 교육규칙
으로 정한다.

제 4 조 (위임규정) 수련장은 영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교육규칙

서울교육원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을 이
에 공포한다.

1989. 6.26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김상근 인

○ 교육규칙 제 335 호

서울교육원직제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교육원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 4 조 제 3항중 제 1호를 삭제하고,
제 2호 내지 제 5호를 각각 제 1호
내지 제 4호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립도서관도서관규칙중 개정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9. 6.26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김상근 인

○ 교육규칙 제 336 호

서울특별시립도서관도서관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립도서관도서관규칙중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제 1항중 " 06:00부터 22:00
까지"를 " 07:00부터 21:00 까지"
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
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9. 6.26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(인)

◎ 교육규칙제 337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4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공직기강확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2. 사정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
- 3. 비위진정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
- 4. 창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사무 통계

제 4 조 제 3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제 1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교원지도 조인, 풍편, 연구, 실험, 시범학교 지도조인

제 4 조 제 3 항 제 8 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 9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9. 교육연구원에 관한 사항

제 4 조 제 4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공립의 유치원,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의 교원인사

제 4 조 제 6 항 제 6 호를 삭제한다.

제 5 조 제 4 항중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동항에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중등학교 (야간특별학급을 포함한다. 본항에서 이하 같다)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인사관리

6. 서울교육원에 관한 사항

제 5 조의 1 제 3 항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8. 서울과학교육원에 관한 사항

제 5 조의 1 제 4 항 제 10 호를 제 11 호로 하고, 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학생실기경진 및 기능경기대회 업무

제 6 조 제 6 호에 제 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퇴촌 야영수련장 및 모현야영수련장 관리운영

제 7 조 제 3 항에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양양입해수련장 관리 운영

제 7 조 제 4 항에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대천입해수련장 관리 운영

제 8 조 제 3 항 제 7 호를 삭제한다.

제 8 조 제 5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 3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옥상외 관리 및 예·결산에

관한 사항

제 10조 제 5항 제 1호 내지 제 4호
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학교시설사업추진법 시행에 관한 사항
2. 각종 보수공사의 설계, 지도, 감독 및 검사
3. 각급학교의 옥상외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
4. 기타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

제 11조 제 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
한다.

1. 교육시설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
2. 실업계 고교 및 직할기관 건축공사
(증·개축)의 설계, 지도, 감독
및 검사
3. 신설중·고등학교 건축공사의 설
계, 지도, 감독 및 검사
4. 관급자제의 수급관리
5. 파서무 및 다른 제에 속하지 아
니하는 사항

제 11조 제 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
한다.

1. 인문계고교 건축공사(증·개축)
의 설계, 지도, 감독 및 검사
2. 신설중·고등학교 건축공사의 설
계, 지도, 감독 및 검사
3.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

제 11조 제 5항 제 1호를 다음과 같
이 한다.

1.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보육공
사의 설계, 지도, 감독 및 검사

제 11조 제 5항 제 2호를 삭제한다.

제 11조 제 6항 제 1호를 다음과 같
이 한다.

1.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의 전기,
설비공사의 설계, 지도, 감독 및 검사
- 제 11조 제 6항 제 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 과 이
하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
포한다.

1989. 6.26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김상준 인

◎교육규칙 제 338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 과 이
하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 과
이하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
정한다.

제 2조 제 6항에 제 10조를 다음과 같
이 신설한다.

10. 사립의 공공도서관, 전문도서관
및 특수도서관의 설립, 제관 및 지
도감독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◎서울특별시 공고 제 529 호

K·S 표시 정지처분 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조 제 1항 및 동
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
같이 표시정지 처분하고 공고합니다.

1989 6.26

서울특별시장

= 다 음 =

업 체 명	일석공업사	취 직일급속
대 표 자	정 명 수	이 중 원
소 재 지	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8-2	서울특별시 성동구 타지동 766-19
규격번호	KSB 1565	KSB 5405
규 격 명	혼로어 드래인	난방용 방열기 부속품
종류·등급	-	온수용 방열기 밸브
처분사유	KS규격 미달	좌 동
처분기간	공고일로부터 3개월	좌 동

◎서울특별시 공고 제 532 호

도시계획사업(교통광장)실시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107 호('89.3.14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88 호('89.6.20)로 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)결장 및 지적 승인된 암사광장의 고덕동길 연결입체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교통광장)실시계획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.
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(한강개발부) 및 강동구청(건설관리과)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람장소: 강동구청(건설관리과)
종합건설본부(한강개발부)

나. 공람기간: 1989.6.26-1989.7.9

1989.6.26

서울특별시청

공 랑 개 요

가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06-1번지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종류: 도시계획사업 (고덕광장)

○명칭: 암사광장건설 (고덕동길 연결 입체 시설공사)

다. 면적 또는 규모: 103,900㎡

라. 시행자의 성명, 주소: 서울특별시강

나. 사업의 착수, 준공예정 년월일: 인가일로부터 1989.12.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의 명세: 별함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: 별함

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3 호 (89.9.31) 및 제 237 호 (89.5.18) 호로,

도시계획시설 (지하철도, 부대시설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기 사업시행변경 허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한다.

2.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사업건설에 비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변경내역을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,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거 바람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 539 호

1989.6.23

서울특별시청

공 랑 개 요

도시계획사업 (지하철도 및 부대시설)

실시계획 변경 공람

가. 사업시행지

○양천구신정동 (132, 215, 249 번지일대)

○구로구신도림동 (332, 330, 344 번지일대)

○구로구고척동 (31 번지일대)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지하철 2 호선 제 2 차량기지 및

일입선 건설공사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79 호 (81.3.23)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동고시 제 331 호 (81.9.10)로 실시계획 일가된 지하철 2 호선 선정차량기지일입선 구간중 일부 노선에 대

다. 사업시행규모

○인입선

구분	시 설 명	폭원(m)	연장(m)	기 점	종 점	비 고
거점	지하철도 (차고인입선)	7-10	2,250	영등포구 도림동 330	양천구 신정동 297	
변경	"	10-30	2,250	"	"	

- 차량기지 : 249,795㎡ (75,560명)
 라. 사업시행자. 주소. 성명
 ○ 당초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518
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김명년
 ○ 변경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-7
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한진희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

- 착수년월일 : '81. 9. 10
 ○ 준공년월일 : '91.12.30

바. 사용할 토지, 건물외 소재지, 지번
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

명세 : 변경내역 별첨

사. 사업제외면도 : 별첨 (생략)

아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
자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설계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대포전화 582-9492)

◎서울특별시공고 제543 호

표. 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89.6.26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업 재 명	한영전자	과 동
2. 대 표 자	한영수	"
3. 소 재 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40-11	"
4. 공 작 번 호	KSC 1604	KSC 1608
5. 공 작 명	저시저항 온도계	저시 열전 온도계
6. 총 류 동 급	1.0 급	과 동
7. 처 분 사 용	허용차 및 동작특성 미달	허용차 미달
8. 처 분 기 간	공고일로부터 3개월	과 동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45 호

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공고

1. 건설부고시 512 호 ('85.11.22)로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483 호 ('86.8.30)로 사업시행 인가된 상계제 4 구역 1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 48 조 제 2 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바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법 제 4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를 공고한다.

1989. 6. 26

서울특별시장

— 공 고 요 지 —

가. 사업명칭 : 주택개발재개발 상계제 4 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사업
 나. 사업구역 : 노원구 상계동 173-3 의 5 필지

다. 시행자 : 상계제 4 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조합

라. 시행기간 : 1986.11.17 ~ '89.5.16

마. 사업시행내역

- 1) 기존 건축물 철거 : 1,528 동
- 2) 주택건설 : 아파트 15 층 9 동 (1,590 가구)
- 3) 부대복리시설

복합상가 2 동 (7,606 ㎡)

저리주차장 (8,835 ㎡)

어린이놀이터 (2,177 ㎡)

4) 사업비 : 347 억원

5) 시공자 : 한국건설주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46 호

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469 호 ('89.6.2)로 공람 공고되고 동고시 제 291 호 ('89.6.20)로 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 시행허가된 종로구수송동 85 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, 제 85 조와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.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쪽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9.6.26

서울특별시장

— 다 음 —

가. 위 치 : 종로구수송동 85 번지 일대

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

- 명 칭 : 수송어린이공원
 다. 시행면적 : 1,791.5㎡
 라. 시행내역
- 도로및광장 : 도로및광장 249.4㎡
 - 조경시설 : 파고라 1개소 33.1㎡
 - 휴양시설 : 의자 12개 38.7㎡
 - 운동시설 : 철봉 1개
 - 유희시설 : 사장 19.5㎡
 - 편의시설 : 음수전 1개소 4㎡
 - 공익관리시설 : 조명등 3개, 휴게
 공간 6개 0.72㎡
 - 기타시설 : 녹지 1,446.03㎡

마. 사업의 시행자

한국일보사㈜ 대표이사 장재국

연합통신㈜ 대표이사 김중규

동방생명보험㈜ 대표이사 이수빈

바. 사업의 착수 : 1989.6.20

사업의 준공 : 1989.6.26

사. 공사설계도서 : 허가일시와 동일
(생략)

구 고 시

◎서대문구고시제 19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
 의거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

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32 조의 5
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함
 니다.

1989.6.27

서 대 문 구 청 장

1. 사업명 : 민영주택 건설사업
2. 사업주체 :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
 31-2 초원건설㈜ 대표 임봉운
3. 사업시행지의 위치, 면적, 규모
 가. 위치 : 서대문구 홍은동산 1-35,
 3-35, 8-35
 나. 면적 : 2,099㎡
 다. 규모 : 연립주택 3층 2동 42세대
4. 사업시행기간 : 1989.6 ~ 1990.6

구 공 고

◎마포구공고제 73 호

관인사용변경공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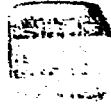













○관인재교부
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하 삼수, 용강,
 석교, 열리동장의 관인울 서울특별시 마
 포구 관인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재
 교부함을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
 합니다.

1989.6.27

마 포 구 청 장

○사용개시일자 : 1989.7.1

○인 영

인 영	신 규	 	제 기	 
공인명 상수동장직인 (민원사무전용) 및 개인				
인 영	신 규	 	제 기	 
공인명 용강동장직인 (민원사무전용) 및 개인				
인 영	신 규	 	제 기	 
공인명 서교동장직인 (민원사무전용) 및 개인				
인 영	신 규	 	제 기	 
공인명 열리동장직인 (민원사무전용) 및 개인				
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사 업 소 고 시 </div> <p>◎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4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 박 운 항 허 가</p> <p>한강구역내 선박(요트)영업에 대한</p>	<p>여 하천법 제 25 조 1 항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25조 제 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9. 6.26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</p>
--	--

○ 선박의 운항허가 내용

접용수령가자	접 용 위 치	접 용 목 적	접용내역
수상박출개발 대표이사 남기동	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14번지앞 하천	요트영업권 위한 선박운항	요트 25척

접용기간 : '89.6.22-'89.10.31

사 령

◎ 1989년 6월 23일자 지방고용직공무원파견 명 제 259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유계식	세종문화회관 파견 ('89.6.23-별도지시시까지)	남산공원관리사업소	지방원예원

6 급 공 무 원 전 입 명 제 260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	직 급
박상국	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행정주사에 임함. 상공과 근무를 명함.	대통령비서실	행정주사

◎ 1989년 7월 1일자 지방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신규임용 명 제 261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
김강영	지방별정직 7급상당(지도사)에 임함. 9호봉을 급함. 환경녹지국 전진생활과 근무를 명함.	신 규

◎ 1989년 6월 23일자 6급기술직공무원면직령 제 262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오석봉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건축지도과	지방건축기사
◎ 1989년 6월 24일자 4급이하공무원면직령 제 263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김태상	내무국 (가로정비추진담당판요원)	종로구	지방서기관
김한영	종로구 도시정비국장	내무국	"
정재진	내무국 (가로정비추진반요원)	청소년과	지방행정사무관
정관훈	" (")	동대문구	"
임육기	청소년과 청소년복지계장	내무국	"
6급이하공무원과전령 제 264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김경오	행정과 (가로정비추진반) 과전 (89.6.24-89.12.31)	행정과	지방행정주사
최성호	"	건설행정과	지방행정주사보
신용호	"	성동구	"
우욱진	업무과 과전해제 행정과 (가로정비추진반) 과전 (89.6.24-89.12.31)	종로구	지방행정주사
◎ 1989년 6월 26일자 7급공무원면직령 제 265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이병식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관계과	지방행정주사보
◎ 1989년 6월 30일자 '89 상반기 정년퇴직령 제 266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조세윤	지방공무원법 제 66조 제 5항 에 의거 정년퇴직	동작구	지방서기관
오창영	"	서울대공원(사)	지방수익관 (4급)
민웅식	"	내무국	지방행정사무관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최승용	지방공무원법 제 66 조 제 5 항에 의거 정년 퇴직	영등포구	지방행정사무관
강신일	"	내무구	"
박인성	"	중구	지방행정주사
박용환	"	용산구	"
정종만	"	"	"
이강윤	"	성동구	"
박병욱	"	동대문구	"
이병채	"	성북구	"
손근식	"	도봉구	"
박선식	"	"	"
정학진	"	은평구	"
박수운	"	서대문구	"
이경수	"	마포구	"
고성수	"	강서구	"
신봉유	"	영등포구	"
허숙	"	영등포보건소	"
이주연	"	동작구	"
이근복	"	"	"
김두한	"	관악구	"
나병찬	"	송파구	"
정원근	"	시립운동장	"
박옥규	"	한강관리사설소	"
이병호	"	중랑구	지방행정주사보
이황길	"	성북구	"
김원호	"	도봉구	"
김운태	"	은평구	"
최승렬	"	양천구	"
김병호	"	"	"
김팔재	"	구로구	"
고희근	"	동작구	"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최동성	지방공무원법 제 66조제 5항에 의거 정년 퇴직	서초구	지방행정주사보
심우남	"	성동구	지방행정서기
주명인	"	도봉구	"
손강현	"	마포구	"
정진현	"	구로구	"
차용만	"	서울대공원(사)	"
김형훈	국가공무원법 제 74조제 1항에 의거 정년 퇴직	종로구	행정주사
이용화	지방공무원법 제 66조제 5항에 의거 정년 퇴직	중 구	지방토목기사
박찬계	"	강서구	지방보전기사
김은경	지방연구, 지도 및 의료직공무 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부칙 제 4조에 의거 정년퇴직	종로구보검소	지방간조사
박미룡	"	성북구보검소	"
장경희	"	마포구보검소	"
황태순	"	용산구보검소	"
김화영	"	강남구보검소	"
박정화	"	시립아동병원	"
김봉순	지방공무원법 제 66조제 5항에 의거 정년퇴직	세종문화회관	지방전기원 (기능직 9 등급)
김인수	"	관리동백수지 사무소	지방전기장 (기능직 7 등급)
손길하	서울특별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 28조에 의거 당연퇴직	총무과	지방장무원
방석희	"	공보관	지방사무원

◎ 1989년 6월 26일자 9급공무원정규임용 명제 267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임용전 홍정원	시민과 사회과	지방행정서기보 " "	지방행정서기보시보 " "
◎ 1989년 6월 27일자 4급이하공무원파견 명제 268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이윤복	업무과 (수도사업본부설립추진요 원) 파견 (89.6.27-89.12.31)	내무국	지방서기관
윤영원	"	서대문구	지방행정사무관
최광순	"	종합건설본부	지방행정주사
최태홍	"	법무담당관	"
이두영	"	서초구	"
안영익	"	아동병원	"
정경철	"	종합건설본부	지방행정서기
김명조	"	중랑구	"
김학순	"	성동구	"
민갑석	"	수원기전과	지방화공기사보
문윤기	"	시립대학교	지방행정서기
류희청	업무과 파견해제	강남구	지방행정주사보
◎ 1989년 6월 30일자 기능직 8등급이하지방공무원특별임용 명제 271호		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손방우	지방조무원 (8등급)	동대문구	조무원 (8등급)
서울특별시			
정 정 공 고			
◎ 시보제 1440호 명제 255호			
페이지	행	정	오
8	상 5	7급공무원 경고	7급공무원 면직